

인사위원회 규정

2021. 4. 1.



제 1 조 (목 적)

- ① 이 규정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- ②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조 (기 능)

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며, 대표이사(단, 인사위원회 위원인 대표이사는 제외하며, 이하 같음)에 대한 평가 및 유임 여부, 사내이사의 보수액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 3 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는 이사 3인으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)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 4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할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해 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는 연장자인 위원이 주재한다.

제 5 조 (소 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최될 수 있다.

제 6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7 조 (부의 및 검토 사항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 - 1. 사외이사 후보 추천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 - 1.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유임 여부
 - 2. 대표이사 해임 및/또는 선임 제안
 - 3. 대표이사 후보 추천
 - 4. 개별 사내이사의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

제 8 조 (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등)

- ①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여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관리·유지하는 사외이사 후보군 중에서 적절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그 목록(이하 "사외이사 후보 목록")을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사외이사 후보 추천)

-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필요할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사외이사 후보 목록을 제공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가 직접 검토한 사외이사 후보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목록의 사외이사 후보에 대하여 서류 검토 및 평판 조회 등을 거쳐 1차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한다.
-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1차 사외이사 후보에 대하여 면접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종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
-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하고,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등)

-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임기 중 대표이사의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업무평가를 진행한다.
-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대표이사의 유임 여부를 검토한다.
-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평가의 결과, 제2항에 따른 유임 여부 검토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사에 통보한다.
-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평가 진행 및 유임 여부

검토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하고,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대표이사 해임 또는 선임 제안 등)

- ① 위원회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평가를 진행하여 해당 대표이사에 대해 유임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, 위원회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제12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진행하고, 해당 대표이사의 해임 및/또는 신규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제안한다.
- ②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해당 대표이사의 해임 및/또는 신규 대표이사의 선임을 진행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여야 한다.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의 이사회 소집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한다.

제 12 조 (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추천 등)

- ① 회사는 대표이사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여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관리·유지하는 대표이사 후보군 중에서 적절한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그 목록(이하 "대표이사 후보 목록")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이 필요할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대표이사 후보 목록을 제공받아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대표이사 후보 목록의 후보를 검토·평가한 후 이사회에 최종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
- ⑤ 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하고,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사내이사 보수액 검토)

- ① 위원회는 개별 사내이사의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개별 사내이사의 연도별 보수액을 검토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액 검토 과정에서 회사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하고,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자료제출 요구권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에게 위원회 출석, 관련자료의 제출 및/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5 조 (간사조직)

- ① 위원회의 간사조직은 [HR담당]으로 한다.
- ② 간사조직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.

제 16 조 (의사록)

- ① 간사조직은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7 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2021. 3. 30.)

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